

의안번호	2211089
의 퇴 인	박정현 의원
회 답 일	2025.7.15.
추계번호	25C3424

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3조의2 (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지원)	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조의2 (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정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20종으로 분류

- 목욕장업소, 도로휴게시설, 도시공원, 식품접객업소,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, 유치원, 대규모 점포, 의료기관, 주택단지, 학교, 학원, 놀이제공 영업소, 주상복합, 박물관, 종교시설, 자연휴양림, 하천, 야영장, 공공도서관
-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어린이놀이기구는 83,750개소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린이놀이 시설에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 규모,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현황 및 대상 수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○ 추가재정소요의 추계 대상은 개정안 시행 이후 설치 및 정비되는 편의시설 이므로, 향후 해당 시설의 규모에 대한 정보 필요

- 장애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활동을 위하여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·제작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시설별로 다르게 발생할 수 있음

□ 또한, 전국 어린이놀이기구에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의 세부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하고, 시설별 해당 편의시설 설치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○ 개정안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의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,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곤란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nabo.go.kr